

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

1971. 7. 23. 제정

2020. 12. 1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2조 (삭제 2010.7.7)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글로벌식품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0.7.7., 2017.12.14.)

1. 글로벌 식품과 영양문제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(개정 2010.7.7., 2017.12.14.)
2. 글로벌 식품 및 영양문제의 지역간 비교 연구 (개정 2010.7.7., 2017.12.14.)
3. 국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 사업 (개정 2017.12.14.)
4.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(개정 2017.12.14.)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업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. (개정 2010.7.7)

- 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-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7.7.)
-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7.12.14.)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영양관리센터, 음식문화센터, 영양유전체센터, 바이오식품연구센터, 식품외식소비자센터, 임상영양유전체센터, 조리식품센터, 대사후성유전학센터, 동물실험지원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17.12.14.)

- ② 영양관리센터는 영양 관련 연구 및 워크숍, 개인 및 집단의 영양상담·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음식문화센터는 전세계의 음식문화에 대한 비교·연구, 한국전통음식의 과학화와 표준화 연구, 전통음식의 실무교육과정, 음식문화 워크숍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- ④ 영양유전체센터는 영양소와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에 의한 비만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 및 개인의 유전자에 따른 맞춤형영양식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바이오식품연구센터는 바이오식품 개방을 위한 신소재 탐색, 영양 생리 활성연구 및 식품의 부가가치화, 신기능성 발굴, 맞춤형 균형식 개발을 목적으로 본교와 대상(주)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- ⑥ 식품외식소비자센터는 식품 및 외식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 행동 분석, 외식 및 급식산업 마케팅 관리 및 서비스 위생 안전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⑦ 임상영양유전체센터는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목표로, 식품이 만성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분자기전 연구, 치료식 개발, 영양교육자료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⑧ 조리식품 센터는 조리식품 개발 및 품질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
⑨ 대사후성유전학센터는 성장, 질병 및 환경인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후성유전적 분석과 기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⑩ 동물실험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에서 수행되는 동물이용 실험의 관리, 감독 및 안전 교육을 담당한다.

⑪ 행정실은 서무회계와 공동기기관리 및 운영, 각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⑫ 행정실의 공동기기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⑬ 삭제(2017.12.14.)

[전조개정 2013.8.20.]

제6조(센터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3.8.20., 2017.12.14.)

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3.8.20., 2020.12.10.)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 (개정 2010.7.7)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0.7.7)

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

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(개정 2010.7.7)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7.12.14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,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3.8.20., 2018.6.20.)

부 칙(1971. 7. 23. 제정)

이 규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3. 3. 1. 개정)

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1. 8. 17. 개정)

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 6. 27. 개정)

이 규정은 199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14. 개정)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7. 전문개정)
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. 개정)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8. 20. 개정)
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2. 14.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